

# KBI ISSUE PAPER

## 이슈 페이퍼

05-9( 13 )

2005 10 4

(KBI )

### ● 목 차

- I. 호주의 방송통신 융합의 배경
- II. 호주 방송 및 융합 산업의 현황과 특성
- III. 방송통신 융합 관련 법제 현황
- IV. 융합서비스 관련 규제 내용과 특성
- V. 요약 및 한국적 시사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Korean Broadcasting Institute

## 요 약 문

- ① **사회문화적 가치와 산업적 가치의 조화** : 우리의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의 기능을 단일화한 정부부처인 DCITA에서 방송통신 산업 정책을 수립, 추진
  - ② **정부 중심의 정책 추진** : 통합규제기구인 ACMA는 실질적으로 DCITA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전반적인 융합 관련 정책기조가 DCITA를 비롯한 정부 중심으로 진행됨
  - ③ **관련 기구간의 원활한 정책 공조체제** : ACMA로 통합된 ABA, ACA를 비롯해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ACCC 등의 임원이 일부 겹침되는 등 유관 기구간의 정책공조 원활
  - ④ **방송 및 통신 관련 분리법체계 유지** : 방송과 통신 분야를 통합 관리하는 별도의 법이 없고, 개별법으로 관장
  - ⑤ **디지털 인프라의 부족** : 브로드밴드 인프라 및 서비스의 개발과 보급 속도가 낮아 IPTV 등 신규 융합서비스의 시장 도입이 더딤
- 
- ① 기구개편의 방향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정책공조체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기대 효과 달성할 수 없음 → 정책시스템의 탄력성과 신속성 요구 증대
  - ② 방송통신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 기능의 수평적 통합은 사회문화적 가치와 산업적 가치의 조화가 필요한 국내 상황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음
  - ③ 융합서비스의 보급에서 중요한 것은 그 산업 가치 못지않게 사회, 문화적 수용성의 고려임

- 현재 국내의 방송통신 융합 관련 법제 개편 논의가 중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각 입장의 논지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언급되어 온 다른 국가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적합하며 그 함의는 무엇인가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필요 있음. 해외 국가 현황이 중요한 것은 그들의 정책 실패와 성공을 통해 간접적으로 검증된 사례가 우리에게 피해야 할 사항과 반드시 반영해야 할 사항을 가르쳐 주기 때문임
- 해외 사례가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려면, 그들의 현 모습이 만들어진 배경과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예를 들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방송 및 통신 산업분야의 선진국으로 불리는 국가들의 융합 법제의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배경 및 역사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여 융합 법제를 사례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그런 점에서 이들 국가 이외에 자주 인용되는 호주의 방송통신 융합 법제 현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현재 호주의 방송통신 융합 법제에 대해 알려진 사항은 첫째, 우리의 방송위원회에 해당하는 ABA<sup>1)</sup>와 통신위원회에 해당하는 ACA<sup>2)</sup>가 2005년 7월 통합되어 ACMA<sup>3)</sup>가 출범한 점, 둘째, 방송 및 통신 분야의 기본정책 기능은 우리의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DCITA<sup>4)</sup>에서 맡고 있다는 점 등임<sup>5)</sup>
- 그러나 호주 융합의 현 모습을 파악함으로써 우리 현황에 맞는 보다 진일보한 함의를 이끌어내려면 호주 방송영상산업 정책의 현황과 특성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
- 이를 위해 본 분석에서는 호주의 방송통신 융합 법제를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배경을 통해 살펴보고, 이러한 배경이 융합 법제에 어떠한 맥락으로 반영되었는가를 파악하고자 함

1) Australian Broadcasting Authority

2) Australian Communication Authority

3) 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4) Department of Communications,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Arts

5) 가 가

## 1)

## 가

- 호주의 정치는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여 국정 전반을 이끄는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는 보수 성향의 자유국민연합이 존 하워드 총리(John Howard) 하에 내각을 이끌고 있음
- 집권 여당인 자유국민연합은 지난 2004년 11월 실시된 총선에서 야당인 노동당을 물리치고 상하원에서 다수를 차지. 자유국민연합은 경제개혁 중심의 정책으로 경제안정과 성장을 이끌어냈고, 이를 바탕으로 이라크 파병으로 인한 정치적 곤경에도 불구하고 총선 승리를 이끌어냄. 이번 총선 승리를 이끌어 낸 하워드 총리는 4기 연속 집권하는 기록을 세움
- 집권 여당인 자유국민연합은 지난 1996년 집권 한 뒤 국가기간시설을 민영화하는 등 경제개혁을 실시하여 IMF를 극복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경제정책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음
- 이라크 파병문제 등으로 맞이한 정치적 위기를 극복한 집권 여당은 경제개혁을 더욱 가속화 할 것으로 전망되며, 방송통신 분야 역시 예외일 수 없음. 통신의 경우 호주 최대 국영통신기업인 Telstra의 정부지분 추가 매각이 예견되고 있음. Telstra는 이동전화서비스를 포함한 통신서비스사업 외에도 케이블과 디지털위성방송 플랫폼사업도 겸하고 있음
- 현재 미디어 관련법들에 대해서도 하워드 총리는 DCITA 장관과 함께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큰 폭의 개정을 피력한 바 있음(Asia Media News Daily, 9/17, 2005). 이는 총선 승리로 인해 상하 양원에서 다수당이 된 집권 여당이 미디어 법 개정 필요성 정치적인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향후의 변화가 큰 폭으로 있을 것임을 예견케 해주는 것임

2)

가

- 호주는 1990년대 후반 IMF위기를 맞아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음. 이 시기에 하워드 총리의 자유국민연합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위해 국가기간시설을 민영화하는 등 과감한 경제개혁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통신시장의 완전경쟁 체제를 도입한 바 있음. 이는 통신시장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였음<sup>6)</sup>
- 호주의 유료방송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늦은 1995년에 시작한 뒤, 자본이 풍부한 국영통신기업<sup>7)</sup> Telstra가 PBL, News Corp와 공동으로 Foxtel을 시작했으며, 또 다른 통신기업 Optus 역시 케이블방송서비스에 참여함
- 1995년 케이블방송이 시작된 이후, 초반에 유료방송이 고전을 면치 못한 것은 유료방송의 광고를 금지하고 수신료재정만으로 운영토록 한 점과 안티사이포닝(Anti-siphoning)<sup>8)</sup> 등의 요인 때문임
- 현재 호주 정부는 규제완화에 초점을 둔 미디어 관련법의 개정을 앞두고 있음. 예를 들면, 첫째, 외국인 소유제한 규정의 완화(철폐 내지는 축소), 둘째, 교차소유 규정 완화(각 주당 매체 1사 이상 소유 금지에서 둘 이상으로 상향), 셋째, 추가 지상파TV 채널의 허가(현재 논란 중) 등의 변화를 앞두고 있음
- 이러한 방송 및 통신시장의 규제 완화 흐름은 성장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호주 정부의 전반적인 경제정책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향후에도 공영방송에 제한된 디지털 멀티채널링(digital multichanneling), 데이터방송사업자 서비스폭 확대 등의 추가적인 완화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견됨

6) Telstra(Foxtel), Optus, Austar 가 1990  
 1992, Foxtel 가 Telstra  
 OTC Telecom  
 Optus  
 7) 1998 50%  
 8)

## 3)

- 호주는 다원성이 강한 사회이기 때문에 자국의 문화적 동질성 확대와 다원성 보호에 적극적임. 이 때문에 미디어 정책의 초점 가운데 하나가 호주 콘텐츠의 보호 발전임
- 실제로 존 하워드 총리가 호주적 가치의 보호를 주장하면서 중요한 원칙의 하나로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를 지적한 바 있음. 이는 호주 사회를 구성하는 문화적 다원성의 보호를 반영한 것으로 공영방송 SBC의 정체성의 토대가 되는 원칙이기도 함
- 이외에도 호주 문화적 동질성 확대와 보호를 위해 호주 콘텐츠 진흥도 중요한 미디어 정책의 하나임. 이 때문에 우리의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를 합한 기능을 하는 정부부처인 DCITA는 문화예술을 전담하는 하위 부처를 두고, 여기서 자국산 콘텐츠의 디지털화, 문화유적 및 박물관 관리, 전통문화교육 등의 지원을 집중하고 있음
- 호주 정부의 이러한 문화 보호 증진 정책은 방송영상산업 분야에서는 호주영화위원회(AFC)<sup>9)</sup>, 호주영화재정공사(FFCA)<sup>10)</sup>, 호주영상음향학교(AFTRS)<sup>11)</sup>, 호주영상음향아카이브(The National Film and Sound Archive)<sup>12)</sup> 등의 기구를 통해 실현되고 있음

---

9) Australian Film Commission

10) Film Finance Corporation Australia

11) Australia Film Television and Radio School

12) 2003년부터 호주영화위원회(AFC) 산하기관으로 활동

1)

- 호주의 방송 산업 규모는 전체 인구와 시청가구 수를 중심으로 판단했을 때, 아시아 시장에서 크지 않은 편임.<sup>13)</sup> 방송체제는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으로 구성됨. 호주의 민영방송은 철저한 상업방송 시스템으로 운영됨(곽기성, 2001)
- 호주의 방송 산업은 지상파TV, 케이블TV, 디지털위성TV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케이블TV와 디지털위성TV는 유료방송서비스에 해당됨. 유료방송의 경우 시장경쟁에 따른 문화적 다양성 쇠퇴의 우려 때문에 늦춰지다가 1995년 탈규제 정책에 따라 도입됨. 안티사이포팅(anti-siphoning) 등의 조치는 지상파TV의 영향력을 증대시켜옴
-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지상파TV의 영향력이 전체 방송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며, 유료방송의 비중은 크지 않지만 점차 증가하고 있음<sup>14)</sup>

<표 1> 호주의 주요 방송매체 현황

방송 종류	사업자명	규모	비고	
지상파TV <sup>15)</sup>	공영	ABC	17.0%	▪ 광고·수신료 없음, 정부 재정 지원
		SBS	4.5%	▪ 다중언어 방송, 시간당 5분 광고 가능
	민영	Seven Network	24.2%	▪ 드라마 강세, Seven Corporate 모기업
		Nine Network	30.3%	▪ 모기업 PBL, 최근 시청률 경쟁 밀림
		Network Ten	24.1%	▪ 캐나다 CanWest 대주주
케이블TV	Foxtel	523,950	▪ 캐나다 최대 유료방송사(케이블, DTT)	
	Optus	164,000	▪ 싱가포르 SingTel 소유	
디지털 위성방송	Foxtel	474,050		
	Austar	498,006	▪ 모기업 Austar United Communication Ltd. <sup>16)</sup>	

※지상파TV 규모는 지상파TV 시장 내 수용자점유율(audience share)

※케이블TV 규모는 2005년 3월 가입자 수, 디지털위성방송 규모는 2005년 3월 가입자 수

※출처: ASI Acom, (3/11, 2005), Country profile : Australia

13) 호주의 인구는 2005년 3월 기준으로 1,990만 명이며, TV가구는 약 690만 정도임

14) 대표적인 케이블TV 사업자인 Foxtel은 2004년 6월 기점으로 누적적자가 12억 9,000만 호주달러, DTT 사업자인 Austar의 경우에는 12억 5,000만 호주달러에 달할 정도로 유료방송의 경영 상황은 좋지 않은 편임

15) 호주 지상파TV는 공영방송 ABC(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SBS(Special Broadcasting Service)와 민영방송 Seven Network, Nine Network, Network Ten 등이 있음. 이 가운데 공영방송인 ABC는 ABC법, SBS는 SBS법에 의해 각각 규제됨

16) DTT 플랫폼사업자인 Austar의 모기업 Austar United Communication Ltd.는 전화모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dial-up internet)과 이동전화서비스사업을 겸하는 통신기업

## 2)

- 첫째, 호주의 뉴미디어산업 역시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활성화 정도가 낮음. 예를 들어, 대표적 융합서비스인 IPTV<sup>17)</sup>의 경우 통신기업 Telstra가 도입을 검토하다가 연기한 바 있음.<sup>18)</sup> Telstra와 함께 최대 케이블방송인 Foxtel의 주주인 PBL(Publishing & Broadcasting Ltd) 역시 미국의 Microsoft와 함께 합작벤처인 Minesm을 설립하고 IPTV를 준비하고 있음
- 둘째, 융합서비스의 하드웨어 인프라가 충분치 않음. 이 때문에 융합서비스 개발 및 보급이 늦어지고 있음. 2004년 4/4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날로그 보급률과 디지털 보급률이 각각 70.2% 대 11.6%인 것을 보아도 호주의 디지털 융합서비스의 도입이 매우 더딘 것을 볼 수 있음(다음페이지 표 참조)
- IPTV를 도입한 홍콩, 일본, 대만 등 아시아권 국가의 브로드밴드 보급률이 평균 40% 이상을 상회하고 있음을 볼 때, 브로드밴드 보급률이 20.6%에 그친 호주의 경우 융합서비스의 활성화에 제한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실제로 Telstra의 IPTV 도입 발표에 대해 많은 IT전문가들이 네트워크의 대역폭 부족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예견했음. 실제로 Telstra는 네트워크의 대부분이 ADSL망이며, 이를 ADSL2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내년에 2천 100만 호주 달러를 투자할 계획임(ASIACOM, 6/14, 2005). IPTV 이외에 융합서비스 성격을 가진 데이터방송, 양방향방송, TPS서비스 등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 셋째, IPTV 등 융합서비스에 대한 기존 매체의 반발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음. 이는 호주 내 케이블방송의 경쟁구도가 다른 국가만큼 심각하지 않은데서 기인한다는 해석이 있음(Asia Media News Daily, 7/12, 2005)

17) 호주에서는 IPTV(Internet Protocol TV)를 Internet TV 또는 Net TV로 불림

18) Telstra는 호주의 대표적인 통신기업으로 메이저 유료방송인 케이블방송 Foxtel의 3대 주주 가운데 하나임. 이 때문에 다른 주주인 News Corp와 PBL이 도입을 반대한 바 있음. Telstra는 이미 실험 서비스는 실시 중에 있음



<표 2> 아시아권 주요 국가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보급률

유형		홍콩	일본	싱가포르	대만	한국
아날로그	일반전화	55.8%	39.3%	45.6%	58.9%	33.0%
	아날로그 TV가구	99.3%	99.3%	99.2%	99.2%	93.6%
	전화모뎀 인터넷	47.4%	40.3%	41.3%	62.1%	43.3%
	2세대 이동전화	113.0%	67.1%	80.7%	96.8%	76.4%
	아날로그 보급률	78.9%	61.5%	66.7%	79.2%	61.6%
디지털	브로드밴드 가입자	69.4%	40.8%	46.3%	52.0%	76.9%
	디지털TV 가구	53.9%	16.1%	4.8%	2.9%	11.0%
	모바일 데이터 가입자	6.6%	54.9%	25.1%	17.6%	39.7%
	3세대 이동전화	2.7%	8.5%	0.0	2.4%	20.6%
	디지털 보급률	33.2%	30.1%	19.1%	18.7%	37.1%

※아날로그 및 디지털 보급률은 해당 유형의 보급률을 모두 합한 값의 평균  
 ※각국의 보급률은 2004년 4분기 자료임  
 ※출처: ASIACOM, (6/14, 2005)

<표 3> 호주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보급률

유형		2003년 4분기	2004년 3분기	2004년 4분기	2004년 4분기 기준 보급률
아날로그	일반전화	1,548,300	13,340,000	10,190,000	51.5%
	아날로그 TV가구	7,054,000	7,080,000	7,095,000	99.2%
	전화모뎀 인터넷	5,200,000	4,700,000	4,400,000	42.5%
	2세대 이동전화	15,170,338	16,806,570	17,477,310	87.8%
	아날로그 보급률				70.2%
디지털	브로드밴드 가입자	698,700	1,310,000	1,548,300	20.6%
	디지털TV 가구	500,000	1,161,000	1,376,000	19.4%
	모바일 데이터 가입자	330,000	650,000	815,000	4.1%
	3세대 이동전화	86,758	342,000	453,000	2.3%
	디지털 보급률				11.6%

※아날로그 및 디지털 보급률은 해당 유형의 보급률을 모두 합한 값의 평균  
 ※출처: ASIACOM, (6/14, 2005)

1)

**DCITA<sup>19)</sup>**

- 우리의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에 해당하는 역할을 통합한 정부부처로 방송, 통신, 스포츠를 비롯한 전 문화영역의 보호와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집행. 주요 목표는 △방송, 통신, 무선통신 등이 호주인의 필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고 국제 경쟁력을 갖도록 유도, △호주 정보통신산업의 발전계기 형성, △문화유적 및 관련 시설 관리, △관광을 포함한 호주의 문화환경 증진, △통신 및 통신기술, 방송 등 주요 분야 각종 자문기구와 위원회 협력, △스포츠 증진, △지적재산권 관련 보호 증진, △국제 또는 지역차원의 호주 통신, 방송, 문화 보호 등에 있음
- 조직은 두 명의 장관 중심으로 운영됨. 장관은 Communications,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Arts 부문을 맡은 Helen Coonan(자유당 소속), Arts and Sport 부문의 Rod Camp(자유당) 등임
- 주요 권한 및 역할은 △예술 및 문화, △방송 및 온라인 규제, △자국 프로그램, △정보통신기술, △정보경제, △지적재산권, △우정사업, △스포츠, △통신 등의 분야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제언과 법률 제개정. 이 가운데 방송 및 통신 관련 분야의 역할과 권한을 보면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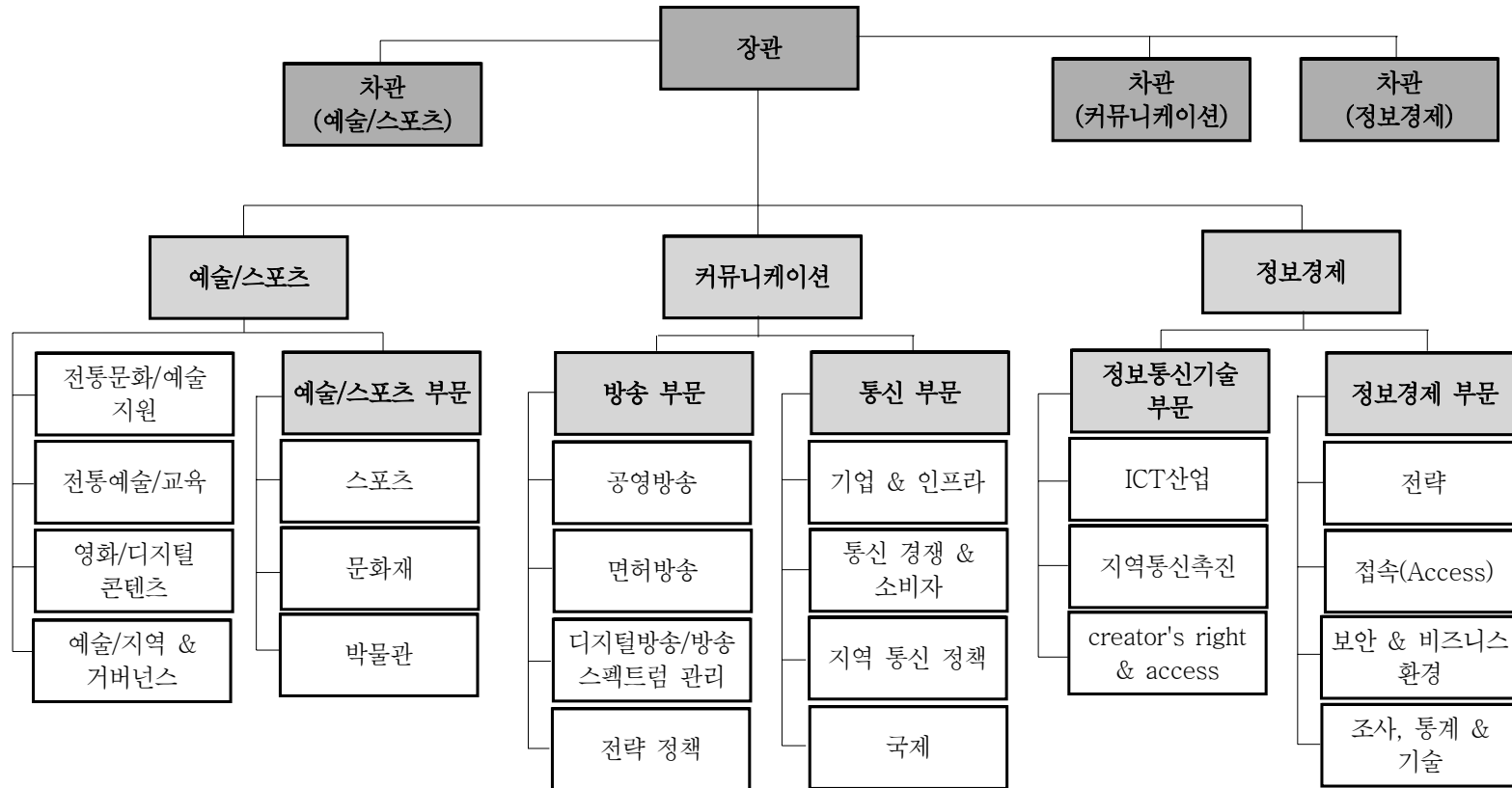
<표 4> DCITA의 주요 기능

분야	주요 내용
방송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 및 디지털 콘텐츠산업 발전 정책 및 관련 기관 정책 제언의 집행</li> <li>▪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 정책 자문</li> <li>▪ 온라인 콘텐츠, 및 온라인 도박의 규제 정책 수립</li> <li>▪ 수신 취약지역(black-spot area) 지원 프로그램 수립</li> <li>▪ ABC, SBS, ACMA 등 유관 기관과의 정책 협의 및 업무 지시</li> <li>▪ 지적재산 관리</li> </ul>
통신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신네트워크 고도화 및 정보통신기술 개발 지원, 중소기업 정책</li> <li>▪ 지식정보경제 발전을 위한 지원 정책</li> <li>▪ 스펙트럼의 분배 및 관리 정책, 장관 제언</li> <li>▪ ICT 영역에서의 국가협약 및 기간산업 발전 지원</li> </ul>

19) Department of Communications,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Arts

- 조직 구성은 크게 세 부문으로 이뤄짐. 예술/스포츠(Arts & Sports),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정보경제(Information Economy) 등으로 구성(다음 페이지 그림 참조)
- 예술/스포츠 부문에는 영화 및 디지털 콘텐츠, 박물관 및 문화유적 관리, 전통문화 유지 관리 등의 업무를 맡음
- 커뮤니케이션 분야는 다시 방송(Broadcasting), 통신(Telecommunication)으로 나뉘고 각각의 하위에 방송과 통신 관련 세부 업무분야가 포함됨. 정보경제 부문은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과 정보경제(Information Economy) 등으로 나뉨
-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통신은 통신시장의 통신시장 내 경쟁과 소비자 보호, 지역 통신시장 정책 등과 같이 통신시장 정책을 담당하고,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통신 기술 개발 및 통신 인프라 진흥 등의 업무에 주력

<DCITA 조직 구성도>



**ACMA<sup>20)</sup>**

- ACMA는 방송통신위원회 정도의 위상을 지닌 기구로 소비자와 이용자의 보호 및 통신산업의 자율규제와 경쟁 촉진 위해, 2005년 7월 기존 ABA(Australian Broadcasting Authority)와 ACA(Australian Communication Authority)를 통합해 설립
- 설립 목적은 첫째, 전자매체가 사회 기준을 존중하고 수용자와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환경을 구현하고, 둘째, 방송서비스대역을 포함해서 주파수스펙트럼의 이용 관리하며, 셋째, 호주의 통신 및 방송의 이해를 국제적으로 대변하기 위해서임
- ACMA와 호주 정부와의 관계 및 주요 권한을 살펴보면, 먼저 호주 연방정부 산하의 규제기구로 준 정부기관이었던 ABA와 ACA의 권한과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통합되었기 때문에 기존 기구 위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음. 즉 ACMA의 정책 틀과 방향은 기존 ABA와 ACA와 동일함
- ACMA는 DCITA의 장관, 관련 법규정, ACCC<sup>21)</sup> 등으로부터 기관 운영에 영향을 받음. 예를 들어, DCITA의 장관은 ACMA에 서면화된 지시가 가능함
- 정부는 ACMA의 위원을 임명하며, 법률로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이상 상임), 비상임 위원 1~7명으로 구성. 위원의 임기는 5년이며, 10년을 넘을 수 없음. 현재 위원 7명으로 구성(의장 1명, 부의장 2명, 비상임 위원 4명)
- 전체 직원은 약 540여명이며, 신분은 공무원임. 연방공무원법(Public Service Act 1999)에 의해 고용됨. 3개 중앙사무소와 4개 지역사무소로 구성
- ABA와 ACA가 통합되기 이전에는 정책공조를 위해 위원간 겸직이 이뤄지기도 함. 예를 들어, ABA의 의장인 린 매덕(Lyn Maddock)은 ACA의 협력위원이기도 했음. 린 매덕은 현재 ACMA의 의장임
- 조직은 방송과 통신 분야를 별도로 나누지 않고, 통합해서 운용

20) 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21)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의 약자로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보호위원회의 기능을 합한 정도의 기구임. ABA와 ACA가 통합되기 이전 ABA는 방송시장의 경우 방송법상의 교차소유 규정을 ACCC와 공동으로 관리토록 되어 있었음

<표 5> ACMA의 주요 기능 (1)

구분	기능
통신규제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7년 전기통신법과 1999년 전기통신법(이용자보호및서비스표준)에 의거한 전기통신규제</li> <li>▪ 전기통신산업에 대한 자문과 지원</li> <li>▪ 전기통신산업에 대해 장관에 보고 및 자문</li> <li>▪ 전송서비스 이용자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장관에게 보고 및 자문</li> <li>▪ 전기통신의 국제적 표준설정에 있어 호주의 이해관리</li> <li>▪ 1997년 전기통신법에 따른 전송면허와 관련된 모든 중요 사안을 모니터링 및 장관에 보고</li> <li>▪ 전기통신산업 관련 사안에 대해 정보 공개</li> <li>▪ 전기통신산업 관련 공공교육 프로그램의 수행</li> <li>▪ 전기통신산업 관련 사안에 대한 공중 자문</li> <li>▪ 스캠법 2003, 1997년 전기통신법, 1997년 전기통신법 전송면허 책무, 1999년 전기통신법, 1997년 변호책무, 1974년 거래관행법 XIC부에 의해 ACMA에 이관되는 기능</li> <li>▪ 상기 법들의 적용 상황 모니터링 및 장관에 보고</li> <li>▪ 상기 기능수행과 관련해 발생하기 쉬운 사항, 기능에 도움이 되는 사항의 처리</li> </ul>
주파수관리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2년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대역의 관리</li> <li>▪ 전파 공동사용체에 대한 자문 및 지원</li> <li>▪ 전파공동체에 관한 장관 보고 및 자문</li> <li>▪ 전파의 국제표준 설정에 있어 호주의 이해관리</li> <li>▪ 전파공동체 관련 사안에 대해 정보 공개</li> <li>▪ 전파공동체 관련 사안에 대해 공공교육프로그램 수행</li> <li>▪ 전파공동체 관련 사안에 대해 공중에게 자문</li> <li>▪ 1992년 전파법, 1983년 전파법(수신면허제), 1997년 전파법(주파수면허제), 1983년 전파세징수법, 1983년 전파법(송신기면허제)에 근거 ACMA에 이관되는 기능</li> <li>▪ 상기 법들의 적용 상황 모니터링 및 장관에 보고</li> <li>▪ 상기 기능 수행과 관련해 발생하기 쉬운 상황, 기능에 도움이 되는 사항의 처리</li> </ul>
방송/콘텐츠/데이터방송 규제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2년 방송서비스법에 따라 방송서비스, 인터넷콘텐츠, 데이터캐스팅서비스 규제</li> <li>▪ 지역기반 방송서비스 대역 분할계획</li> <li>▪ 1992년 방송서비스법에 따른 면허의 발급, 갱신, 정지, 취소, 기타 집행조치</li> <li>▪ 공동체 라디오와 공동체TV서비스를 위한 면허발급과 관련된 조사 및 청문회</li> <li>▪ 1992년 방송서비스법 제171조에 따라 장관 지시사항 조사 수행</li> <li>▪ 상업TV 방송면허와 상업라디오 방송면허 발급을 위한 가격기간시스템의 설계 및 관리</li> <li>▪ 면허관련 수수료 징수</li> <li>▪ 프로그램과 데이터캐스팅 콘텐츠 관련 이슈에 대한 의견 연구수행 또는 의뢰</li> <li>▪ 공동체 기준에 맞는 방송서비스 제공자, 데이터캐스팅서비스 제공자의 규약 개발 지원 및 규약 준수사항 모니터링</li> </ul>

<표 6> ACMA의 주요 기능 (2)

방송/콘텐츠/ 데이터방송 규제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주 방송프로그램 표준의 개발 및 준수 모니터링</li> <li>▪ 방송서비스, 데이터캐스팅서비스 관련 불만의 모니터링 및 조사</li> <li>▪ 방송산업, 인터넷산업, 데이터캐스팅산업의 기술진보 및 서비스 추세에 대한 보고 및 자문</li> <li>▪ 1983년 호주방송사업자법, 1992년 방송서비스법, 2001년 양방향갬블링법, 1964년 라디오면허수수료법, 1991년 특별방송서비스법, 1999년 전기통신법 158F(1), 1964년 TV면허수수료법 등에 의거 ACMA에 이관된 기능</li> <li>▪ 1992년 전파법의 조항에 의해 ACMA에 이관된 기능</li> <li>▪ 방송산업, 인터넷산업, 데이터캐스팅산업 관련 장관에 대한 보고 및 자문</li> <li>▪ 상기 법들의 적용 상황 모니터링 및 장관에 보고</li> <li>▪ 상기 기능의 수행과 관련해 발생하기 쉬운 상황, 기능에 도움되는 상황의 처리</li> </ul>
부가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주소 관리, 서비스 및 설비 제공 등과 관련된 기능 등</li> </ul>

※출처: 김원식, 이상우, 신호철(2005), <융합 환경의 네트워크, 콘텐츠 규제 : OECD 사례 및 시장개방의 시사점>, KISDI 이슈리포트

( ) : Lyn Maddock		( ) : Chris Cheah		
▪	▪	▪	▪	Gerard Anderson Malcolm Long Johanna Plante Rod Shogren
▪	▪ 가	▪	▪ ,	
▪	▪	▪	▪	
▪	▪	▪ 가	▪	
▪	▪	▪	▪	
▪	▪	▪	▪	
▪	▪	▪	▪	
▪ New South Wales				
▪ Northern Australia				
▪ Southern Australia				
▪ Western Australia				

<표 7> ACMA의 조직

2)

- 호주의 경우 방송과 통신 분야를 별도로 관장하는 분리 법체계를 가짐
- ‘1992년 방송서비스법’은 가장 포괄적인 법령으로 방송, 인터넷, 데이터방송 분야를 총괄 규제. 방송서비스법에 의하면, 호주 내 방송서비스는 7개 유형으로 세분됨 ; 전국방송서비스, 상업방송서비스, 커뮤니티방송서비스, 유료방송서비스, 유료협송서비스, 공개협송서비스, 국제방송서비스
- ‘1992년 방송서비스법’ 외에도 ‘데이터방송요금부과법’<sup>22)</sup>, ‘온라인서비스에 대한 방송서비스보완법령’<sup>23)</sup> 등을 통해 규제내용 보완. 이외에도 ACMA의 권한과 의무를 개별 주요 서비스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음

<표 8> 호주의 방송서비스 유형

유형	정의 및 내용
전국방송서비스 (national broadcasting service)	ABC법과 SBC법, 의회방송법에 의거해 ABC, SBC, 의회방송을 전국방송서비스로 규정
상업방송서비스 (commercial broadcasting service)	광고를 재원으로 수신장비를 보유한 사람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방송서비스
커뮤니티방송서비스 (community broadcasting service)	커뮤니티의 목적을 위해 비영리기구에 의해 무료로 제공되는 방송서비스
유료방송서비스 (subscription broadcasting service)	가입비와 수신료 등을 통해 이용하는 방송서비스
유료협송서비스 (subscription narrowcasting service)	특정 지역의 특정 집단에 대해 유료로 제공되는 방송서비스 (특정 이벤트를 방송하는 한시적 서비스 포함)
무료협송서비스 (open narrowcasting service)	유료협송과 동일하되 수신료 없는 방송서비스
국제방송서비스 (international broadcasting service)	호주 국외 지역으로 방송되는 서비스로 ABC, SBS 등이 실시

22) Datacasting Charge Imposition Act 1998

23) Broadcasting Services Amendment (Online Services) Bill 1999



<표 9> 호주의 방송 및 통신 분야 관련법

분야	법안
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서비스법(1992)</li> <li>▪ 라디오커뮤니케이션법(1992), 라디오면허료법(1992)</li> <li>▪ 텔레비전면허료법(1964)</li> </ul>
융합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서비스보완법령(1999)</li> <li>▪ 양방향게임블링법(2001)<sup>24)</sup></li> <li>▪ 데이터방송요금부과법(1998)</li> </ul>
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신법(1997)</li> <li>▪ 통신의 소비자보호 및 서비스표준법(1999)</li> </ul>

<표 10> 방송서비스법의 주요 개념 규정

개념	정의
방송서비스 (broadcasting service)	텔레비전 프로그램 또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수신장비를 가진 개인에게 전파스펙트럼, 케이블, 광케이블, 위성 등의 수단 또는 복합수단을 통해 전달하는 서비스
데이터방송서비스 (datacasting)	텍스트, 데이터, 말, 음악, 기타 음향, 비주얼 이미지(동영상 혹은 정지 이미지), 기타 다른 형태 또는 이러한 형태의 조합의 형태의 콘텐츠 수신 장비를 가진 개인들에게 서비스하는 것 (여기서 서비스의 전달은 방송 서비스밴드를 사용)

24) 호주에서는 ‘양방향게임블링법’(Interactive Gambling Act 2001)에 의해 인터넷 상의 온라인 도박(카지노, 경마 등 배팅게임 포함)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 현재 호주에서 이뤄지고 있거나 준비 중인 융합서비스에는 데이터방송, IPTV, 모바일방송 등이 있음. 첫째, 데이터방송은 ‘1992년 방송서비스법’에 따라 텍스트, 데이터, 비주얼 이미지 등 유형에 상관없이 방송서비스대역을 이용해 이뤄지는 콘텐츠 서비스로 규정됨. ACMA가 데이터방송 사업면허를 부여하고 관리 감독
- 데이터방송사업자가 전송할 수 있는 콘텐츠는 △정보프로그램(홈뱅킹, 홈쇼핑 포함), △교육 프로그램, △양방향 컴퓨터게임, △텍스트 또는 정지이미지로 구성된 콘텐츠, △의회방송, △전자우편, △인터넷 콘텐츠 등에 한정되어 있으며,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방송 프로그램은 전송할 수 없음
- ACMA는 데이터방송사업자가 ‘1992년 방송서비스법’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모니터함
- 호주 방송통신 융합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을 위해 DCITA의 헬렌 쿠난(Helen Coonan) 장관은 지난 9월 중 2007년 1월부터 데이터방송의 제한 조항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힘. 데이터방송사업자는 2007년 1월부터 기존의 허가된 콘텐츠 이외에 유료방송 서비스, 유료 협송 등을 전송할 수 있게 될 예정임
- 호주의 IPTV는 현재 본격적으로 서비스되고 있지 않음. DCITA의 헬렌 쿠난(Helen Coonan) 장관은 2005년 9월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공식적으로 IPTV의 허용 의사를 밝힘. 전제조건으로 IPTV가 현 지상파무료상업방송의 형태를 띠지 않을 것을 요구하면서 지원을 약속한 바 있음

- 첫째, 정치적으로 호주는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집권 여당의 정책기조가 국정운영에 강하게 반영됨. 지난 2004년 말에는 보수 성향의 자유국민연합이 이라크파병이라는 정치적 난제에도 불구하고 4기 연속 집권에 성공하는 등 높은 국민적 지지를 얻는데 성공했음
- 199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를 강도 높은 경제개혁 정책으로 극복한 집권 여당은 기존 노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방송통신 분야도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이지 않음. 통신의 경우 최대 국영통신기업인 Telstra의 정부지분이 50% 매각되었으며, 방송에서는 미디어 관련법의 개정을 통한 규제완화의 움직임이 있음. 예를 들면, 외국인 소유제한 규정 완화(철폐 또는 축소), 교차소유 규정 완화(각 주당 매체 1사 이상 소유 금지에서 둘 이상으로 상향), 추가 지상파TV 채널의 허가(현재 논란 중) 등의 변화를 앞두고 있음.
- 방송 및 통신시장의 규제완화는 성장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호주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주요 규제기구인 ABA와 ACA를 통합해 ACMA를 설립한 것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함
- 둘째, 사회, 문화적으로 호주는 다원성을 토대로 한 민주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문화적 동질성 및 정체성의 보호·증진을 중요한 정책 목표로 하고 있음. 이는 DCITA를 예술/스포츠, 커뮤니케이션, 정보경제 등의 세 부문으로 구성한 데서도 알 수 있음
- 문화, 예술 정책 전반을 다루는 예술/스포츠, 방송과 통신정책을 맡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정보통신기술을 포함한 산업진흥을 담당한 정보경제 등 세 부분은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유기적인 정책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방송통신의 융합을 단순히 경제성장의 동력으로만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가치와 산업적 가치의 조화를 통한 달성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셋째, 호주는 통신인프라가 융합서비스를 수용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상황임. 케이블 및 DSL망 등을 포함한 광대역통신망의 보급률이 2004년 4분기 현재 전체 가구의 20.6%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DSL망의 대부분이 ADSL급이어서 IPTV 등의 융합서비스가 보급되는데 인프라 업그레이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호주가 ACMA를 설립한 데는 융합서비스를 대비한 성격도 있지만, 그 못지않게 현재의 방송 및 통신산업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함
- 넷째,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재 호주의 방송 및 통신 관련법이 단일 법안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고 각각의 필요에 맞춰 분리법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음. 방송과 인터넷, 데이터방송 등을 포괄한 ‘방송서비스법’과 통신 분야 전반을 관장하는 통신법 등을 중심으로 법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음

- 융합 법제 정비에 있어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 다양한 측면의 필요와 요구를 적절히 반영해 최적화시킨 시스템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임. 근시안적 산업 활성화만을 강조한 경제적 측면의 접근이나 사회, 문화, 정치적 가치만을 강조한 이상주의적 접근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언젠가 다시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호주 등의 국가들이 방송통신 산업 분야의 치열한 국제 경쟁에도 불구하고 사회 문화적 가치와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체제를 만들었는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            ]

## &lt;국내 문헌&gt;

강만석, 윤재식(2004), <주요국의 방송제도 연구>, 서울: 한국방송광고공사  
 광기성(2001), <호주의 미디어 : 다원주의와 미디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김원식, 이상우, 신호철(2005), <융합 환경의 네트워크, 콘텐츠 규제 : OECD 사례  
 및 시장개방의 시사점>, KISDI 이슈리포트

## &lt;외국 문헌&gt;

ASIAcom,(6/14, 2005), Telstra's IPTV plans create stir  
 ASIAcom,(8/10, 2004), Country profile : Australia  
 ASIAcom,(3/11, 2005), Country profile : Australia

## &lt;자료 사이트&gt;

Australian Broadcasting Authority : <http://www.aba.gov.au>  
 Australian Communication Authority : <http://www.aca.gov.au>  
 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 <http://www.acma.gov.au>  
 The Australian Film Commission : [http://www.afc.gov.au](http://www AFC.gov.au)  
 Australian Interactive Media Industry Association) : <http://www.aimia.com.au>  
 Asia Media News Daily : <http://www.asiamedia.ucla.edu>  
 Department of Communications,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Arts  
 : <http://www.dcita.gov.au>

## &lt; 1 &gt;

&lt;표 1&gt; ACMA로 통합되기 이전 ABA와 ACA의 기능

기관	기능
AB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채널 밴드의 주파수 대역 분배</li> <li>▪ 호주 방송서비스 시장을 허가하고 규제</li> <li>▪ 실질적인 산업발전을 지원</li> <li>▪ 방송프로그램의 요구사항 실현 여부 감시</li> <li>▪ 방송 및 인터넷 콘텐츠 불만사항 조사</li> <li>▪ 방송시장 및 관련 기술의 발전, 서비스와 사업자 동향 등을 조사</li> </ul>
AC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외적으로 호주 커뮤니케이션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대표</li> <li>▪ 인·허가를 통해 무선주파수 대역을 관리</li> <li>▪ 가격 기준으로 배정되는 주파수 대역에 대한 분쟁을 해결</li> <li>▪ 기계적 간섭을 해결하기 위해 조사와 연구 수행</li> <li>▪ 해당 산업체들의 규정 준수여부를 규제</li> <li>▪ 통신계획의 실행</li> <li>▪ 통신사업자를 인·허가하고, 허가조건의 준수여부 확인</li> <li>▪ 통신사업시설과 건설에 관련된 법안 실행</li> <li>▪ 사업자들이 소비자 서비스 규정을 준수하는지 규제</li> <li>▪ 통신산업 성과에 대한 보고 및 산업체와 소비자들에게 정보 제공</li> </ul>

< 2 >

<표 2> 세계 주요국가의 방송통신 융합 관련 정책/규제기구 현황

유형	국가	구분	정책기관	규제기관		
				경제적 규제	내용 규제	
정책 규제 분리	정책 통합 규제 통합	호주	방송	정보통신문화부 (DCITA)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위원회 (ACMA)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위원회 (ACMA)
			통신			
		이탈리아	방송	통신부 (MOC)	방송통신위원회 (AGCOM)	방송통신위원회 (AGCOM)
			통신			
	정책 분리 규제 통합	영국	방송	통상산업부 (DTI)	커뮤니케이션 위원회 (OFCOM)	커뮤니케이션 위원회 (OFCOM)
			통신	문화미디어스포츠부 (DCMS)		
		캐나다	방송	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CRTC)	방송통신위원회 (CRTC)
			통신	문화부		
	정책 분리 규제 분리	프랑스	방송	경제재정산업부 (MEFI)	ARCEP	ARCEP
			통신	문화커뮤니케이션부 (MCC)	시청각위원회 (CSA)	시청각위원회 (CSA)
정책 규제 통합	독립 위원회형	미국	방송	연방통신위원회 (FCC)	연방통신위원회 (FCC)	자율규제 (FCC 사후규제)
			통신			
	정부 부처형	일본	방송	총무성	총무성	자율규제
			통신			

< 3 >

<표 3> 해외 방송영상산업 및 문화예술 분야 진흥정책추진체계

국가	문화정책 주관 기구	방송영상 정책과의 관련성 및 기구 업무
영국	문화미디어스포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영상, 예술, 문화유산, 건축, 스포츠, 관광 포함</li> <li>▪ 창조산업(방송, 광고, 영화, 디자인, 건축, 음악, 출판, 컴퓨터 게임, 소프트웨어 등) 활성화에 초점</li> </ul>
프랑스	문화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 문화유산, 미디어, 출판, 음악과 무용을 포함한 공연예술, 시각예술, 프랑스어 등 문화분야 전반 관장</li> <li>▪ 방송영상은 산하 DDM과 CNC 중심 활성화 추진</li> <li>▪ 관광은 사회간접자본-교통-주택-관광부에서 담당</li> </ul>
독일	주 총리성, 총리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영상정책은 주 총리성과 총리회의 관할</li> <li>▪ 문화정책은 각 주 문화부와 교육문화부 등에서 관할</li> </ul>
미국	국립예술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영상정책에는 관여하지 않음</li> <li>▪ 국립예술위원회는 비정부기구로 문화예술 진흥만 관여</li> </ul>
일본	경제산업성, 총무성 문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청은 순수예술 분야 담당</li> <li>▪ 방송영상정책은 총무성 담당</li> <li>▪ 콘텐츠산업은 경제산업성</li> <li>▪ 범정부 차원의 국가전략 위한 지적재산전략본부가 총괄 조정</li> </ul>
호주	커뮤니케이션 정보기술예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 예술, 방송영상, 온라인 콘텐츠, 정보통신기술, 지적 재산권, 스포츠, 통신 등의 정책분야 관장</li> <li>▪ 방송규제는 방송위원회(ABA) 담당</li> <li>▪ 문화 정체성 유지 발전에 초점</li> </ul>
캐나다	문화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 예술, 음악, 방송영상, 박물관 및 미술관, 출판, 공연 예술 등 캐나다 문화 전반에 걸쳐 정책 관장</li> <li>▪ 문화적 다양성 및 고유문화의 유지·발전이 목적</li> </ul>
이탈리아	문화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부 내 문화영상부가 별도로 존재하며, 여기서 이탈리아의 영화, 방송영상물 관련 정책 입안</li> </ul>
싱가포르	정보통신예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싱가포르 내 문화예술 및 정보통신 분야 총괄 관장</li> <li>▪ 산하 미디어발전위원회와 정보커뮤니케이션발전위원회가 규제기관 역할 담당</li> </ul>
말레이시아	예술문화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 예술 관련 정책은 예술문화부 담당</li> <li>▪ 방송영상정책은 에너지수자원커뮤니케이션부 담당</li> </ul>